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55호

시행일자 2017. 1. 5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-정정고시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정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82호(2017. 1. 5)

2. [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813-1522호(2016. 12. 30)]로 안내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개정안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5호) 관련입니다.

3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 275호, 2016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정정사항

- 제1편 제2부 제1장 및 제15장 적용대상의 사업명칭 수정
  (최초)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 → (정정) 소아 야간휴일 진료(달빛어린이병원) 운영사업
- 제1편 제2부 제1장 나. 산정방법 중 제외사항에 초진진찰료(가-1가)의 '주5' 추가

(대의협 제813-1555호) 시행일자 2017. 1. 5

○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
붙임: 고시개정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